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321     |
| 의 퇴 인 | 홍기원 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08.07. |
| 추계번호  | 25C3656     |

#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①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②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③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0억 2,800만원, 2030년 236억 1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1,137억 3,400만원(연평균 227억 4,700만원)으로 추계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 | 65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65      | 13     |
|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 | 150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 150     | 30     |
| 센터 운영(안 제10조)  | 21,814 | 22,250 | 22,695 | 23,149 | 23,612 | 113,519 | 22,704 |
| 합계             | 22,028 | 22,250 | 22,695 | 23,149 | 23,612 | 113,734 | 22,747 |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<br>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| <p>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경계선지능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 | 안 제5조<br>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)               | <p>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(제4항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6조<br>(실태조사)                       | 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8조<br>(직업훈련 지원)                    | <p>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0조<br>(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)            | <p>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중앙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(제3항) 시·도지사는 지역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지원센터를 시·군·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(제6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div>의무규정</div> <div>재량규정</div> |
| 6  | 안 제12조<br>(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| 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<br>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             | ×        | ·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, 인식을 개선하며,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 하도록 규정함<br>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조를 근거로 경계선지능인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선언적·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추계가 어려움 |
| 2  | 안 제5조<br>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등)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(제4항) 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보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6조<br>(실태조사)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8조<br>(직업훈련 지원)                    | ×        | ·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을 강구하고, 관련 조사·연구를 촉진 하도록 규정함<br>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조를 근거로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선언적·권고적 성격의 조항으로 추계가 어려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0조<br>(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)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2조<br>(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) | ×        | ·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시스템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, 수행 기능 등 구체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,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, 본 추계서에서는 ①기본 계획 수립(안 제5조), ②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, ③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 운영(안 제12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    - (안 제5조)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되며,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     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
      -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, 자료 제작,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
    - (안 제6조)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    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는 '24년 최초로 이루어져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가정함
      - 실태조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가정
      - 연구용역비 외에 자문, 자료 제작, 홍보를 위한 제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
    - (안 제10조)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
      - 서울특별시는 '20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, '22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'25년 12억 5,800만 원을 지원함
      - 참고로, 최근 3년 동안 광역·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다수 제정되었으나, 별도 사업 편성은 미미한 상태임
- \* [참고자료]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현황

-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6,500만원(연평균 1,300만원)으로 추계
  - 관련 사례에 따른 연구용역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

[표 2]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| 연구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   | 사업연도 | 연구용역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| 경기도  | 2023 | 60    |
|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| 경상북도 | 2024 | 69    |

자료: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

[표 3]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-----|
|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제1항) | 65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65 | 13  |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5,000만원(연평균 3,000만원)으로 추계
  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'24년 9월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, 1억 5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

- 참고로, 조사는 지역사회 내 경계선지능인 인원, 위험군 비율, 학습·직업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함
- 실태조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,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이루어진다고 가정

[표 4] 실태조사 실시 비용 추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 | 150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150 | 30  |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다. 센터 설치·운영(안 제10조)

-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사례를 준용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18억 1,400만원, 2030년 236억 1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1,135억 1,900만원(연평균 227억 400만원)으로 추계
-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·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나,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
  -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는 대부분이 최근 3년 내 제정되어 향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확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 - 따라서, 본 추계서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업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- 제정안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센터가 설치되어 총 17개소가 신규 운영된다고 가정
- 서울특별시는 센터 운영에 '25년 12억 5,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고,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

[표 5] 센터 설치·운영 비용 추계

| 구분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 계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센터 운영비(A, 백만원)    | 1,283 | 1,309 | 1,335 | 1,362 | 1,389 | 6,678 | 1,336 |
| 센터 수(B, 개소)       | 17    | 17    | 17    | 17    | 17    | —     | —     |
| 추가재정소요(C=A×B, 억원) | 218   | 222   | 227   | 231   | 236   | 1,135 | 227   |

주: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시·도별 센터 규모 및 편성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정현수 | 이진우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|
| 정현수 | 02-6788-4627 | jhs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현황

| 구분 | 광역자치단체 | 시·도교육청 | 기초자치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○      | ○      | 강동구, 강서구, 강북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성북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중구, 중랑구(21)      |
| 부산 | ○      | ○      | 강서구, 기장군, 남구, 동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사하구, 수영구, 연제구, 중구, 해운대구(1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 | ○      | ○      | 동구, 북구, 서구, 수성구(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 | ○      | ○      | 남동구, 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, 연수구(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 | ○      | ○      | 광산구, 남구, 서구(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| ○      | ○      | 대덕구, 동구, 서구, 유성구(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산 | ○      | ○      | 동구, 북구, 중구(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세종 | ○      | ○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○      | ○      | 가평군, 고양시, 광명시, 광주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성남시, 안산시, 안양시, 양평군, 여주시, 연천군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의정부시, 이천시, 파주시, 평택시, 포천시, 하남시, 화성시(22) |
| 강원 | ○      | ○      | 강릉시, 원주시, 춘천시, 화천군(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북 | ○      | ○      | 옥천군, 음성군, 제천시, 청주시, 충주시(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충남 | ○      | ○      | 당진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산시, 아산시, 예산군, 천안시, 청양군, 홍성군(9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북 | ○      | ○      | 군산시, 전주시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전남 | ×      | ×      | 광양시, 무안군, 여수시(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북 | ○      | ○      | 안동시, 예천군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남 | ×      | ○      | 양산시, 함안군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주 | ○      | ○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계 | 15     | 14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: 1. '25년 7월 기준 자료임

2. 경계선지능인,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를 포함한 것임

3. 교육청의 경우,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 ○ 표시

자료: 교육부 자료<sup>1)</sup>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1) 교육부,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(2024), 17p